

종 전	변 경	비 고
본당 건물감가상각적립금 적립의 무 (신설) 본당예산관리지침 1쪽 참조	본당 재건축을 위한 자금에 총당할 목적으로 건물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<u>예산액 비율에 따라 사목공제회에 적립</u> 하여야 하며, 적립된 <u>자금의 사용은 교구장의 승인</u> 을 득하여야 한다. 총예산액이 5억원 미만 본당 3% 총예산액이 10억원 미만 본당 4% 총예산액이 10억원 이상 본당 5%	본당 재건축을 위한 건물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건축자금의 일시 부담완화 계정과목 : (#1232) 건물감가상각적립금
신축본당의 추가공사 금지 (신설) 본당예산관리지침 2쪽 참조	성당신축이 완료된 본당으로써 <u>완공된 날로부터 5년간</u> 개축 및 증축을 하지 못한다. 단,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<u>교구장의 승인</u> 을 득하여야 한다.	자금 부담과 공사시행 시 철저한 준비와 감리 등 관리를 하여 부실을 사전에 방지
부임 후 공사 금지 (신설) 본당예산관리지침 2쪽 참조	본당신부 <u>부임 후 1년간</u> 금액의 과소에 불구하고 본당 공사를 하지 못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<u>교구장의 승인</u> 을 득하여야 한다.	본당신부 부임 후 구조변경 등 공사로 인한 신자불만 해소
교구납부금 감면 ◆ 신축 중인 본당은 75% 감면 ◆ 부채가 본당 수입의 50% 이상의 본당은 50% 감면 ◆ 부채가 2008년도 본당 살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본당은 차등제로 감면 본당예산관리지침 5쪽 참조	◆ <u>성당을 신축 중인 본당은 2년간 전액 면제</u> ◆ 부채가 본당 수입의 50% 이상의 본당은 50% 감면 ◆ <u>삭제</u> ◆ <u>부지만 마련된 신설본당은 5년간 전액 면제</u> ◆ <u>건물이 있는 신설본당은 2년간 전액 면제</u> ◆ <u>신설본당의 모본당은 2년간 면제</u> 단, 공동으로 분당에 참여한 본당은 분담금 비율로 배분	75%→2년간 전액 감면 중전과 동일 - 신설본당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를 마련(건물이 확보된 본당과 구분) 신설을 주도한 본당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본당 분당에 참여 유도
	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 단, 2008년도 신설된 본당과 모본당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.	